

문서번호	BSKS-1-1-07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4

2012.02.01.제정 2013.09.17.개정 2016.03.01.개정 2017.09.01.개정 2019.12.10.개정 2020.03.03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교무처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.) 학칙 제32조(교육과정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'교육과정편성'이란 학문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목과 학습활동을 심의하고 체계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.
  - ② '교육과정 편성 기준(지침)'이라 함은 교육과정편성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의미한다.
- 제3조(업무분장) ① 교육과정운영은 교무처에서 주관하며 교육과정 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제시한다. <개정 2020.09.25.>
  - ② 학과(계열)(이하 "학과"라 한다.)에서는 교육과정편성표 작성, 검증 및 타당성 확인, 교육과정변경 요청, 학과 단위 평가위원회 및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운영한다.<개정 2013.09.17.>.
- **제4조(교육과정편성 시 고려사항)** 학과장은 교육과정 편성에 앞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(안)을 작성한다.
  - 1.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와 학과의 교육목표의 연계성 고려
  - 2. 양성하고자 하는 인력의 유형
  - 3. 산업체의 수요 및 요구사항
  - 4. 기 편성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학생과 교육수요자 요구사항
  - 5.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
  - 6. 국가직무능력표준 정책 반영
  - 7. 대학 핵심역량 및 학과 핵심역량 반영 <신설 2020.03.03.> [전문개정 2016.03.01.]
- 제5조(교육과정편성 확정) 교육과정 편성은 학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무처의 교육과정편 성지침에 의거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 및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개발, 편성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하여 확정한다.<개정 2016.03.01., 2017.09.01., 2019.12.10., 2020.09.25>
- 제6조(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) ① 본 대학에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을 위해 위임한 사항의 처리 및 기타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위하여 각 학과에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16.03.01.>



문서번호	BSKS-1-1-07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4

- ②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각 학과 전임교수와 관련 산업체 인사, 겸임교수, 졸업생 중 위촉받은 약간 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자료수집, 연구발표, 회의소집 등의 업무는 해당 학과장이 통괄한다.
- ④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항신설 2016.03.01.>
  - 1. 학과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
  - 2. 학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  - 3. 산업체와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  - 4. 기타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에 관한 사항
- 제7조(교과구분) 교과구분은 교양과목, 전공과목, 자유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.
  - ① 교양과목의 교과목은 오프라인강좌와 온라인강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    - 1. 오프라인강좌
      - 가. 대학공통과목(대학정책 및 직업기초능력):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인성소양, 소통협업, 창의융합, 자기계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의한 교과목으로 편성 <개정 2016.03.01., 2017.09.01., 2020.03.03.>
      - 나. 학생선택과목(대학정책 및 대학인재상) : 인성소양, 소통협업, 창의융합, 자기계발 영역으로 나누어 편성 <개정 2020.03.03.>
- 2. 온라인강좌 : 인성소양, 소통협업, 창의융합, 자기계발 영역으로 나누어 편성<개정 2017.09.01., 2020.03.03.>
  - ② 전공교과라 함은 전공을 위한 기초과목으로 해당 학과의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NCS 기반의 전 공과목, SME요구기반 직무분석에 따른 전공(역량)과목과 실험실습과목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.03.01., 2020.03.03.>
  - ③ 교직과목은 교원 자격 및 실기교사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교과목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6.03.01.>
  - ④ 자유선택과목(자선)이란 소속학과 및 타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 신청하여 수강 후학점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, 융합교과목은 자유선택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될 수 있다. <개정 2020.03.03.>
  - ⑤ 유아교육과의 교직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, 실기교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학과의 교직과목 은 전공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16.03.01.]

- 제8조(교과이수단위)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기 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- 제9조(교과 이수구분 및 학점배점 기준)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교양과목, 전공필수, 전공선택, 자유선택과목, 교직과목으로 구분하며, 각 교과목의 학점 배점기준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0조(교육과정편성기준)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으로 개편한다.<개정 2016.03.01.>
  - 1. 학과별 교육목표와 핵심역량, 특성화에 바탕을 둔 전공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편성한 다. <개정 2020.03.03.>



문서번호	BSKS-1-1-07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4

- 2. 산업체, 졸업생, 재학생 등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, 학생의 수학능력을 고려한 실무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.
- 3. 교양과목은 전공교육과는 달리 학문간 경계를 떠나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목을 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 공통교양으로 개발하고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한다. <개정 2016.03.01., 2017.09.01., 2020.03.03.>
- 4. 전공과목은 학과의 인력양성유형에 적합한 전문직업인을 배출하기 위해 당해 학과의 핵심역량 과 실용직무역량 성취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발한다. <개정 2016.03.01., 2020.03.03.>
- 5. 실습과목은 전공실습과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.
- 6. 전공과목, 실습 등의 교과목은 학과 핵심역량과 실용직무역량의 하위역량에 기초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6.03.01., 2020.03.03.>
- 7. 학과의 인력양성유형에 적합한 자격증 취득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.<개정 2016.03.01.>
- 8. 동일 교과목을 2학기 이상 개설할 때에는 선·후 이수 순위를 1, 2, 3, 4 등으로 표시한다.
- 9. 산업체위탁교육, 연계교육 및 주문식 교육, 현지학기제, 실습학기제, 공동학위과정, 유연학기제, 집중이수제, 다학기제, 트랙기반 모듈식 교육과정, 복수전공제, 융합전공제 등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3.03.>
- 10. 교수와 학습자 간의 시간적,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평생교육 및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교 온라인 강좌 운영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.
- 제11조(교육과정 평가, 개선 및 환류) ① 학과는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시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 및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평가하여야 하며, 교육과정 편성 시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환류한다.<개정 2017.09.01., 2019.12.10.>
  - ② 확정된 교육과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 단, 교육과정 기본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교과목의 부분 개정 경우에는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무처장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.<개정 2017.09.01., 2020.09.25>

<전문개정 2016.03.01.>

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(단, 제7조 1호 가목 1)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)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.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로 『산학 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07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4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5.12.24.)에 의하여 『산학·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